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5. 9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기후환경과]

# 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기후환경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상위법령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을 명시하고, 개정된 내용에 맞게 용어 및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환경보전시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을 기재하여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,
- 안 제2조에서는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.
-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라 조문 각 항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하고, “5년마다 수립”을 “수립·시행”으로 개정하였습니다.
- 또한 부칙에서는 관련 타 조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된 조항으로서, 기존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」 제5조를 개정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

-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. 7. 21일부터 8. 1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5. 8. 27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오니,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 5097
----------	-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9. 3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  
(기후환경과장)

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을 명시하고 개정된 내용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)
- 나. 법령과 중복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(안 제2조)
- 다. 용어 및 내용 개정(안 제7조)
- 라. 관련 다른 조례 개정(부칙)

## 3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(2025. 7. 21.~8. 11.)결과: 의견 없음
 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 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  - 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  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 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대구광역시달서구의”를 “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”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”을 “(환경계획의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대구광역시달서구환경보전계획(이하 “환경보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”을 “구 환경계획(이하 “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과한”을 “관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「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」 제12조에 따른 대구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”를 “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 제1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환경보전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·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환경”이란 <u>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.</u></li> <li>2. “자연환경”이란 <u>지하·지표(해양을 포함한다)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(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 한다)를 말한다.</u></li> <li>3. “생활환경”이란 <u>대기, 물, 토양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(日照),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.</u></li> <li>4. “환경오염”이란 <u>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</u></li> </ol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환경정책기본법</u>」에 따라 <u>대구광역시달서구의 -----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양오염, 해양오염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 방해,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

5. “환경보전”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·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

6. “달서의제21”이란 21세기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말한다.

제7조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환경보전계획(이하 “환경보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5. 기타 환경보전에 과한 주요사항

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

제7조(환경계획의 수립) ①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구 환경계획(이하 “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-----

② ----- 환경계획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관한 -----

③ ----- 환경계획-----

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민이나 사업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# 【 관계 법령 】

## □ 환경정책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”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.
2. “자연환경”이란 지하·지표(해양을 포함한다)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(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3. “생활환경”이란 대기, 물, 토양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(日照), 인공조명,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.
4. “환경오염”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 방해,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
5. “환경훼손”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(濫獲) 및 그 서식지의 파괴, 생태계 질서의 교란, 자연경관의 훼손, 표토(表土)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.
6. “환경보전”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·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
7. “환경용량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,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.
8. “환경기준”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.

제19조(시·군·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 환경종합계획 및 시·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·군·구의 환경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 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삭제 <2021. 1. 5.>

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21. 1. 5.>

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·군의 환경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, 대기,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1. 5.>

⑥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 1. 5.>

## □ 시·군·구 환경계획 수립지침(2021. 07. 환경부)

2-1-2.(목표연도)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으로 하되,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(예: 2030년, 2035년).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5년마다 목표연도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,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

제5조(위원회의 자문)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」 제12조에 따른 대구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

제15조(협의회 설치)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민·관 협력기구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